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0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0,041,600원, 지방교육세 33,721,090원, 농어촌특별세 24,002,360원 합계 477,76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8

가. 원고는 2011. 1. 19.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redacted]시특별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1. 2. 1. 장학금 지급, 섬유산업분야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2. 11. 원고의 대표자 B으로부터 [redacted]시 C 외 11필지 면적 합계 38,94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이 정한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420,041,600원, 지방교육세 33,721,090원, 농어촌특별세 24,002,360원 합계 477,765,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하고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8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장학단체의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을 장학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103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6 내지 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5. 30. 국토해양부고시 D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E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8

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 B이 2010. 12.경 [redacted]교육감에게 원고의 설립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기본재산목록과 매각계획서에는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2011. 2.경 현금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보상금(보상사정금액 9,900,942,050원)으로 재단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과 원고 사이에 2011. 2 .11. 체결된 증여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F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이 적용되는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3. 2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9,900,942,050원을 수령한 뒤, 원고의 기본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 대신 '현금 9,900,942,050원'을 편입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2011. 5. 25. [redacted]교육감으로부터 그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에 매년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8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김선영

판사 홍영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8

별지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